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도로법』 제61조(도로의 점용) 및 같은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성명,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도로법』 제7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공고명 : 도로 불법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0. 4. 2. ~ 2020. 4. 16.(15일간)
3. 송달할 서류의 종류 :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불법점유물 원상복구 명령
(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)
4. 공고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, 게시판
5. 불법 도로점용 현황(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)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붙임 참조	붙임 참조	붙임참조	자체집행

6. 공고내용

-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(철거)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동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7. 기 타

-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(☎032-560-448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